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2서식] <개정 2020. 3. 13.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(201동 호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	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(법인소재지)			(휴대)전화번호		
①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	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원		
		④ 증여·상속 원	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원		
	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[] 보유 현금 [] 그밖의 자산(종류:)		
	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		⑦ 소계 원		
	차입금 등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원	주택담보대출 원		원	
			신용대출 원		원	
			그 밖의 대출 원		대출 종류: ()	
	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 (건)				
		⑨ 임대보증금 원		⑩ 회사지원금·사채 원		
		⑪ 그 밖의 차입금 원		⑫ 소계 원	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		원			
	⑬ 합계		원			
	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	원		
⑮ 계약이체 금액		원				
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	원				
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	원				
지급 사유 ()			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(입주 예정 시기: 2025 년 5 월)		[] 임대 (전·월세)	[] 그 밖의 경우 (재건축 등)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 2021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